

#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328 |
|----------|-----|

제출년월일 : 1997. 11. 2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 제안이유

1997. 12. 31까지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2000. 12. 31까지 지방세법상 감면시한과 일치시키고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현행시세 감면조례의 상이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지방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안제2조)

### ○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

- 본인명의등록 → 본인, 배우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 승용자동차1대 →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 면제

### ○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

-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승용자동차 이전, 말소등록시
- 중고자동차매매용제시신고 확인서제출시
-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 사용할수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할때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될때

나.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안제4조)

### ○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

- 본인, 부모, 배우자 → 본인, 배우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 승용자동차 1대 →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면제

### ○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

- 새로운 승용차를 등록한날부터 30일내 종전승용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시
- 중고자동차매매용제시신고 확인서 제출시
-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할때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될 때

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 조정(안제11조)

- 주택개량대상자 1년이상 거주사실 확인은 주민등록부 등에 입증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로
-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건축물면적의 7배를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로 수정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조정(안제1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 임대주택용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경감을
  - 전용면적 40㎡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면제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
  -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마.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제14조)

-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재배함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지 세 면제
- 마을공동작업에 직접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 제외)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바.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규정 세분(안제15조)

- 주차장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
-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중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건축물 감면 규정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사.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제16조)

-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 중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

### 아. 쉼터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안제18조)

- 지프형 자동차는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차 감면규정 폐지

### 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세목 확대(안제20조)

-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추가하고
- 주민세의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 차.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제21조)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는 한편 사업소세 면제규정 신설함.

### 카. 중소기업조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제22)

-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세목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규정 신설

### 타.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안제23조)

- 유통산업 지원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용으로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경감

파. 직접사용의 의미규정 신설(안제25조)

-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

하. 감면자료의 제출규정 신설(안제27조)

-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는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및 미술관
6.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사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

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동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 제7장 보 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개정이유                                                   |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 상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 규정하여 ----- 이바지함을 -----. |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2000. 12. 31까지 개정. |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①-----거주하고-----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 면제한다.              | 승용자동차를 이륜자동차까지 감면 확대                                   |
|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 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                   |                   |                                                      |                                                        |

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상이급수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후단 신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감면규정 확대  
승용차1대 소유한 것으로 보는규정 신설

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  
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  
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  
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  
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  
를 회수하거나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  
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  
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

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수익사업에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  
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에서 규  
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

**의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  
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  
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  
-----  
-----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차  
동차1대에 한한다)-----  
-----  
-----  
-----

##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  
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  
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  
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  
되는 자동차.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  
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천재 · 지변 · 화재 · 교통  
사고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  
차를 회수하거

승용자동차 1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신설

|                                                                                                                                                            |                                                                                                                                                                            |
|------------------------------------------------------------------------------------------------------------------------------------------------------------|----------------------------------------------------------------------------------------------------------------------------------------------------------------------------|
|                                                                                                                                                            | <p><u>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u><br/> <u>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u><br/> <u>동차</u></p> <p><u>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u><br/> <u>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u><br/> <u>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중</u><br/> <u>명되는 자동차</u></p> |
|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br>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br>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br>가 그 집단촌안에서 취득<br>· 소유하는 전용면적85제곱<br>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br>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br>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br>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br>을 위한 감면) -----<br>----- <u>과세기준일</u><br><u>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u><br><u>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u><br><u>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u><br>-----<br>-----<br>-----.            |
|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br>대한 감면(생략))                                                                                                                               |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br>대한감면) (현행과 같음)                                                                                                                                           |
|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br>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br>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br>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br>준일 현재 유료노인복                                                                         |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r>-----<br>-----<br>-----                                                                                                                              |

제6조의2를 제7조로 변경

|                                                                                                                                                                                                                |                                                                                                                                   |                              |
|----------------------------------------------------------------------------------------------------------------------------------------------------------------------------------------------------------------|-----------------------------------------------------------------------------------------------------------------------------------|------------------------------|
| <p>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 <p>-----<br/>-----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p>                                                           |                              |
| <p>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 <p>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                              |
| <p>제7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br/>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2.(생략)</p> | <p>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br/>-----,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br/>-----,<br/>1.~2.(현행과 같음)</p> | <p>사회교육시설용을 사회교육시설등으로 변경</p> |

|                                                                                                                  |                                                                               |
|------------------------------------------------------------------------------------------------------------------|-------------------------------------------------------------------------------|
| 3. <u>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u>                                                                         | 3. <u>건설교통부</u> -----<br>-----<br>-----.                                      |
| 4.~7.(생략)                                                                                                        | 4.~7.(현행과 같음)                                                                 |
|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u>각종학교</u> 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u>학교</u><br>-----<br>-----<br>-----<br>-----. |
|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생략)                                                                                            |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현행과 같음)                                                    |
|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u>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u>   | <삭 제>                                                                         |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31일이전에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  
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감면)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  
정된 자와 사업계획에 의하  
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  
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  
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  
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  
시 거주할 목적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  
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감면) ①-----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  
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  
-----  
-----  
-----주민등록법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  
-----

주민등록부 등에 입증되는  
자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  
대별 주민등록표로 변경

1.~4.(생략)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

1. ~ 4. (현행과 같음)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주민등록표-----

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  
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  
간 면제한다.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  
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  
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부  
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  
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  
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  
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  
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조정  
사용승인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으로 변경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임대주택용에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까지 감면 확대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  
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  
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4조의16제1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  
의3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삭 제>

주택중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  
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  
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  
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  
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  
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

제13조(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점을 받은자  
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  
품생산단지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  
된 참여자 및 농산물

농외소득원 개발을 농어촌  
특산물생산단지로 감면규  
정 변경

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

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자가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경감

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  
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받은 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  
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  
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  
를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

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  
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  
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  
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  
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  
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  
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  
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  
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을 5  
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경감



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  
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자

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  
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  
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  
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  
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  
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  
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  
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  
장에 입주하여 직접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경감  
재산세 : 100분의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50 경감

<신 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

감면 신설

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동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  
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  
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감면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주  
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  
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  
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  
용건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  
가 없는 자가 -----  
-----  
-----노  
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

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  
 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  
 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  
 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  
 산합)를 면제한다. 다만, 주  
 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  
 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를 추징한  
 다.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변경

-----(단서  
 현행과 같음)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삭 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  
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  
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  
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  
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  
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  
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  
치일 또는 사용점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삭 제〉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  
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  
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  
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  
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영업기간(일수)

x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  
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  
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  
 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  
 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  
 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  
 인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  
 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  
 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  
 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  
 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  
 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  
 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  
 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5  
 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  
 획세 면제

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  
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영업기간(일수)

x 365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  
은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  
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  
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  
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하고 건축  
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  
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  
동차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  
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대  
한감면) ①한국고속철도건  
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  
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  
점차장·차량기지·정비장  
·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  
선 시설 등을 말한다)에대  
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과  
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  
-----  
-----  
-----.

<삭 제>

감면규정 삭제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8조(꺠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삭 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꺠형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1대상 년세액으로 한다.

|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      |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씨씨이하              | 10원    | 160원 |
| 2,000씨씨초과<br>2,500씨씨이하 | 10원    | 180원 |
| 2,500씨씨초과<br>3,000씨씨이하 | 12원    | 200원 |
| 3,000씨씨초과              | 15원    | 230원 |

레저, 일반승용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차 감면규정 폐지

제6장지역발전지원등을위한감면

제19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감

면)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

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중

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

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

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의하여 선정된 시

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

역안에서 다음

제6장지역발전지원등을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감

면)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

14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용 토지 -----

-----

-----

-----

-----

-----

-----

-----

-----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

축사업에 대한 감면) -----

-----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

역안의 부동산에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시설용토지로 변경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토 소급하여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95. 12. 29제정)제6조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경감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  
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  
하는 자

교부일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  
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합)를 면제하고, 동공  
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  
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  
업원합)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  
-----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  
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단  
서 현행과 같음)

사업소세 면제 확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신 설〉

〈삭 제〉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신 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  
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  
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신 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  
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

유통산업지원을위한 감면  
규정 신설

|                                                                                          |                                                                                                                                                                           |                     |
|------------------------------------------------------------------------------------------|---------------------------------------------------------------------------------------------------------------------------------------------------------------------------|---------------------|
|                                                                                          | <u>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u><br><u>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u><br><u>취득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u><br><u>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u><br><u>액의 100분의50을경감한다.</u>                                                  |                     |
|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br>감면) (생략)                                                             | (현행과 같음)                                                                                                                                                                  |                     |
| 제7장 보 칙                                                                                  | (현행과 같음)                                                                                                                                                                  |                     |
| 제2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 〈삭 제〉                                                                                                                                                                     |                     |
| <u>조례에 의한 시세 감면에</u><br><u>관한 사무는 읍·면장(출장</u><br><u>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u><br><u>여 처리한다.</u> |                                                                                                                                                                           |                     |
| 〈신 설〉                                                                                    | <u>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u><br><u>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u><br><u>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u><br><u>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u><br><u>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u><br><u>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u><br><u>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u> |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규정<br>신설 |
| 제26조(감면신청등) (생략)                                                                         | (현행과 같음)                                                                                                                                                                  |                     |





### 〈별지서식〉

|                                                                                                                                                                                               |     |                 |         |                    |  |
|-----------------------------------------------------------------------------------------------------------------------------------------------------------------------------------------------|-----|-----------------|---------|--------------------|--|
| 시 세 감 면 신 청 서                                                                                                                                                                                 |     |                 |         | 처리기간               |  |
|                                                                                                                                                                                               |     |                 |         | 7 일                |  |
| 성 명<br>(법 인 명)                                                                                                                                                                                |     |                 |         | 주민등록번호<br>(법인등기번호) |  |
| 주 소                                                                                                                                                                                           |     |                 |         |                    |  |
| 감 면 내 용                                                                                                                                                                                       | 세 목 | 연 도/기 분         | 당 초 세 액 | 감 면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사 유                                                                                                                                                                                       |     | 시 세 감 면 조 례 제 조 |         |                    |  |
| <p>파주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 정 에 의 하 여<br/>위와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 청 인 인(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파 주 시 장 귀하</p> |     |                 |         |                    |  |
| 구 비 서 류                                                                                                                                                                                       |     |                 |         | 수 수 료 없음           |  |

## '세계속에 우뚝솟은 우리 경기도'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 (0331) 249-4153 / 담당자 최영환

문서번호 세정 13430-1939

시행일자 1997. 10. 16 (    년)

(경유)

**반응      받는곳      참조**

## 참조

|     |    |          |                        |   |   |
|-----|----|----------|------------------------|---|---|
| 신원  |    |          | 지시                     |   |   |
| 집   | 일자 | 99.10.16 | 지시<br>접<br>재<br>공<br>람 | 국 | 장 |
| 수   | 번호 |          |                        | 과 | 장 |
|     |    | 처리과      |                        | 계 | 장 |
| 담당자 |    | 김영웅      |                        | 계 |   |

제 목 사·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시달

1. 내무부 세제 13400-337 ('97. 10. 10) 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시·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시·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천리안(제목: 시·군감면조례)을 통하여 전송하였으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결등 제반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라며, 시·군에서 감면조례개정시 표준안과 달리 조례내용을 규정할 경우(단순자구 수정은 제외)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덧붙임 : 시(군)세갑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기전송).    끝.

# 경기도

## 내무국장 전격

받는곳 : 러 【세정 (세무, 재무, 부과) 과장】

#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 구  | 분             | 상      |                    |   | 반                    |   |     | 기  |    |     | 하  |    |        | 합                  |   |                      | 계 | 비고 |
|----|---------------|--------|--------------------|---|----------------------|---|-----|----|----|-----|----|----|--------|--------------------|---|----------------------|---|----|
|    |               | 건 수    | 수                  | 량 | 금                    | 액 | 건 수 | 수량 | 금액 | 건 수 | 수량 | 금액 | 건 수    | 수                  | 량 | 금                    |   |    |
| 취득 | 계             | 9<br>2 | 10,828.4<br>977.14 |   | 2,124,815<br>171,905 |   |     |    |    |     |    |    | 9<br>2 | 10,828.4<br>977.14 |   | 2,124,815<br>171,905 |   |    |
|    | 1. 매입         |        |                    |   |                      |   |     |    |    |     |    |    |        |                    |   |                      |   |    |
|    | 2. 교환으로<br>취득 |        |                    |   |                      |   |     |    |    |     |    |    |        |                    |   |                      |   |    |
|    | 3. 기타취득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4. 매각         | 9<br>2 | 10,828.4<br>977.14 |   | 2,124,815<br>171,905 |   |     |    |    |     |    |    | 9<br>2 | 10,828.4<br>977.14 |   | 2,124,815<br>171,905 |   |    |
| 처분 | 5. 양여         |        |                    |   |                      |   |     |    |    |     |    |    |        |                    |   |                      |   |    |
|    | 6. 교환으로<br>처분 |        |                    |   |                      |   |     |    |    |     |    |    |        |                    |   |                      |   |    |

##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연풍리토지처분계획

### □ 처 분 목 적

학교법인 연풍학원(파주공고)에서 전문대학설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자하는 토지로서 지역교육문화의 발전과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매각코자 함.

### □ 처 분 내 역

가. 토 지

| 소   | 제   | 지      | 면  | 적                   | 산      | 출 | 금       | 액  |
|-----|-----|--------|----|---------------------|--------|---|---------|----|
| 파주읍 | 연풍리 | 439-8  | 전  | 3,966m <sup>2</sup> | 공시지가금액 |   | 376,770 | 천원 |
| 파주읍 | 연풍리 | 산83-9  | 임야 | 169m <sup>2</sup>   | 공시지가금액 |   | 2,078   | 천원 |
| 파주읍 | 연풍리 | 438-12 | 대  | 217m <sup>2</sup>   | 공시지가금액 |   | 21,634  | 천원 |
| 파주읍 | 연풍리 | 438-13 | 임야 | 3,129m <sup>2</sup> | 공시지가금액 |   | 38,486  | 천원 |
| 파주읍 | 연풍리 | 438-15 | 대  | 77m <sup>2</sup>    | 공시지가금액 |   | 7,676   | 천원 |
| 파주읍 | 연풍리 | 438-16 | 대  | 227m <sup>2</sup>   | 공시지가금액 |   | 22,631  | 천원 |
| 계   |     |        |    | 7,785m <sup>2</sup> |        |   | 469,275 |    |

나. 토지의 위치 : 학교법인 연풍학원 옆(파주공고 옆)

다. 도시계획법상 용도 : 일반주거지역

라. 사용용도 : 전문대학 설치부지로 활용

마. 처분예정가 : 469,275천원 (공시지가로 산정)

- 추후 매각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

바. 처분방법 : 98년도에 수의계약 매각

- 도시과와 협조하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학교용지로 용도지구  
변경한후 매각(지방재정법제시행령제95조 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특약등기하여 매각

사. 처분사유 : 전문대학의 설치를 통한 지역 교육 문화의 발전

# '98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 일련<br>번호 | 재 산 의 표 시      |     |     | 매각대상<br>수 량 | 과표또는<br>평 가 액 | 매각시기    | 매각사유 | 매 수 회 망 자          |     | 비고 |
|----------|----------------|-----|-----|-------------|---------------|---------|------|--------------------|-----|----|
|          | 지목             | 소   | 재 지 |             |               |         |      | 주 소                | 성 명 |    |
| 1        | 전              | 파주읍 | 연풍리 | 439-8       | 3,966         | 376,770 | 상반기  | 학교법인연풍학원<br>(파주공고) | 최애도 |    |
| 2        | 임야             | 파주읍 | 연풍리 | 산83-9       | 169           | 2,078   | ·    | ·                  | ·   |    |
| 3        | 대              | 파주읍 | 연풍리 | 438-12      | 274           | 21,634  | ·    | ·                  | ·   |    |
| 4        | 임야             | 파주읍 | 연풍리 | 438-13      | 3,129         | 38,486  | ·    | ·                  | ·   |    |
| 5        | 대              | 파주읍 | 연풍리 | 438-15      | 77            | 7,676   | ·    | ·                  | ·   |    |
| 6        | 대              | 파주읍 | 연풍리 | 438-16      | 227           | 22,631  | ·    | ·                  | ·   |    |
| 계        | 토지<br>건물<br>기타 |     |     |             | 7,785㎡        | 469,275 |      |                    |     |    |

#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연풍리토지처분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335 |
|----------|-----|

제출년월일 : 97 . . .

제출자 : 파주시장

## 1. 제안이유

학교법인 연풍학원(파주공고)에서 전문대학설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자하는 토지로서 지역교육문화의 발전과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매각코자 함.

## 2. 주요골자

가. 대상토지 : 6필지 , 7,785㎡ , 469,275천원

- 파주읍 연풍리 439-8 전 3,966㎡ (공시지가금액 376,770천원)
- 파주읍 연풍리 산83-9 임야 169㎡ (공시지가금액 2,078천원)
- 파주읍 연풍리 438-12 대 217㎡ (공시지가금액 21,634천원)
- 파주읍 연풍리 438-13 임야 3,129㎡ (공시지가금액 38,486천원)
- 파주읍 연풍리 438-15 대 77㎡ (공시지가금액 7,676천원)
- 파주읍 연풍리 438-16 대 227㎡ (공시지가금액 22,631천원)

나. 토지의 위치 : 학교법인 연풍학원 옆(파주공고 옆)

다. 도시계획법상 용도 : 일반주거지역

라. 사용용도 : 전문대학 설치부지로 활용

마. 처분예정가 : 469,275천원 (공시지가로 산정)

- 추후 매각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

바. 처분방법 : 98년도에 수의계약 매각

- 도시과와 협조하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학교용지로 용도지구를 변경한후 매각 (지방재정법제시행령제95조 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 (전문대학설치부지)로 특약등기하여 매각

사. 토지 현황도 : 별 첨

### 3. 주요 토의과제

전문대학의 설치를 통한 지역 교육 문화의 발전

재해복구 또는 구조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18. 지방공기업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매각할 때
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도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21. 삭제(90.11.6)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등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

각할 때

- 22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23. 채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24. 도서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25.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③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90.11.6〉

제95조의2(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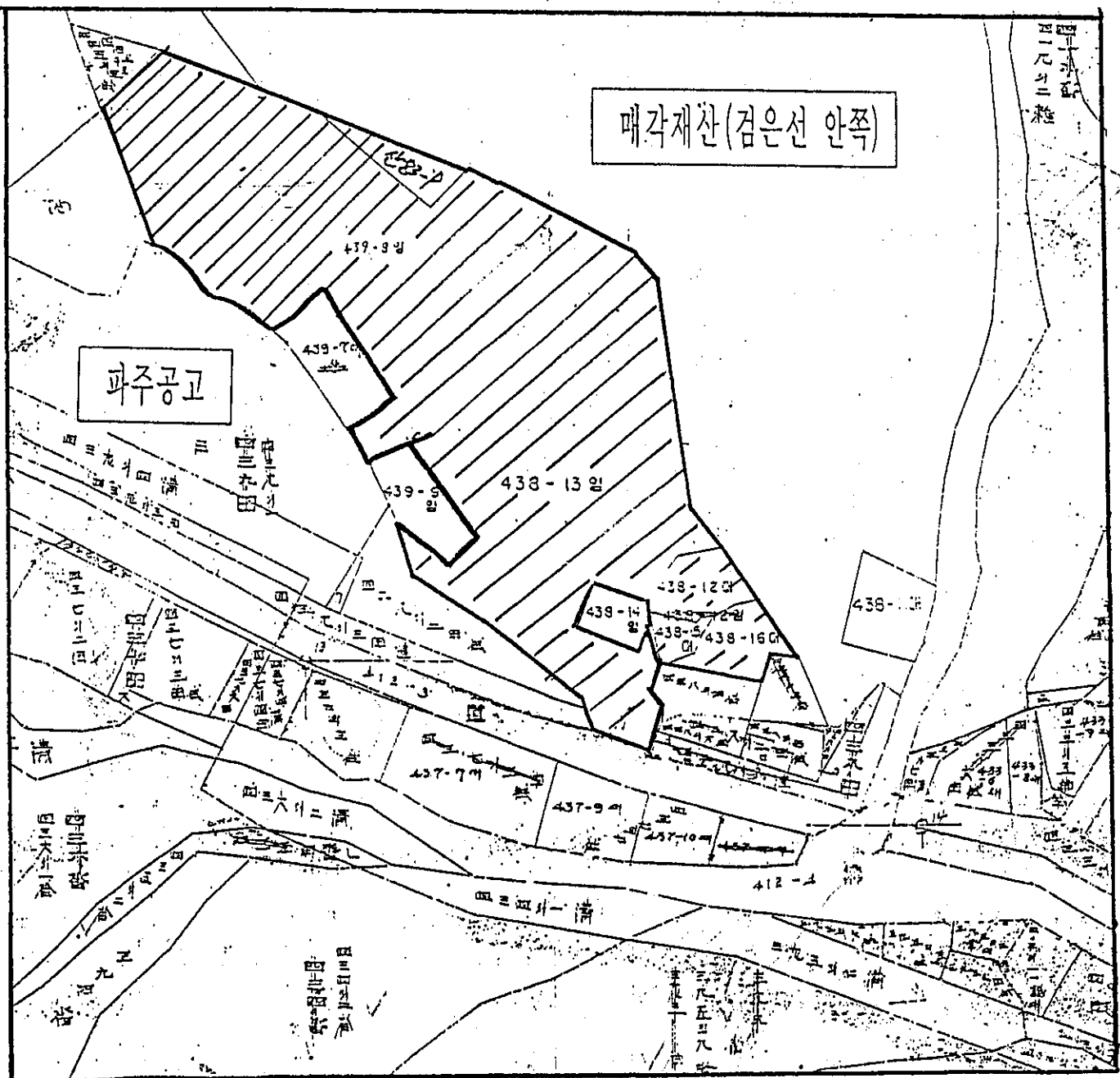


# 토 지 현 황 도

□ 재산의 표시

○ 처분대상 : 연풍리 토지 처분

- 토지 : 파주시-파주읍 연풍리 439-8 전 3,966㎡외5필지



##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여성회관토지건물처분동의안

의안

번호

336

제출년월일 : '97. . .

제출자 : 파주시장

### 1. 제안이유

파주시여성회관은 대지 473.8㎡, 건축면적 637.4㎡의 협소한 규모의 건물로 운영해 왔으나 시대민화및 인구의 증가로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여 21세기를 대비할 여성의 전당으로 신축함에 있어 현재의 여성회관을 처분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대상토지 : 473.8㎡
- 대상건물 : 637.4㎡
- 처분에정가 : 계 589,705천원  
토지 473,800천원  
건물 115,905천원
- 처분방법 : 공개경쟁입찰공고
- 도시계획상 용도 : 일반주거지역
- 파주시여성회관 운영사항
  - 투자액(88년-97년) : 계 428,683천원  
건축비 162,000천원,  
운영비 266,683천원
  - 수입액(88년-97년) : 없음
- 토지현황도 : 별첨

# '98.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m<sup>2</sup>, 천원)

| 일련<br>번호 | 재 산 의 포 시      |          |                | 매각대상<br>수 량    | 과표또는<br>평 가 액      | 매 각<br>시 기 | 매각사유                   | 매 수 회 망 자 |     |  | 비 고 |
|----------|----------------|----------|----------------|----------------|--------------------|------------|------------------------|-----------|-----|--|-----|
|          | 지 목            | 소 재 지    | 일단의수량          |                |                    |            |                        | 주 소       | 성 명 |  |     |
| 1        | 대지             | 금촌동782-4 | 473.8          | 473.8          | 473,800            | 상반기        | 여성회관<br>신축비제원<br>으로 충당 | 공개경쟁입찰    |     |  |     |
| 2        | 건물             | 금촌동782-4 | 637.4          | 637.4          | 115,9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토지<br>건물<br>기타 |          | 473.8<br>637.4 | 473.8<br>637.4 | 473,800<br>115,905 |            |                        |           |     |  |     |

## 98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파주시여성회관토지건물처분계획

### ☐ 처분목적

파주시여성회관은 지역여성들의 기술교육및 취미교육을 위하여 협소한 시설규모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및 인구의 증가로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여 21세기를 대비할 여성의 전당인 여성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현재의 여성회관을 처분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자 함

### ☐ 공유재산 처분내역

#### 1. 토지

| 소재지      | 지적     | 지목 | 처분에정가        | 비 고 |
|----------|--------|----|--------------|-----|
| 금촌동782-4 | 473.8㎡ | 대지 | 473,800,000원 |     |

#### 2. 건물

| 위 치       | 건물 내역                                                           | 처분에정가        | 비 고 |
|-----------|-----------------------------------------------------------------|--------------|-----|
| 금촌동 782-4 | .강의실(1층,3층)<br>.여성단체협의회실<br>.사무실<br>.숙직실및 창고<br>.보일러실<br>.로비계단등 | 115,905,000원 |     |

☐ 처분방법 : 공개 경쟁입찰

# 토 지 현 황 도

□ 재산의 표시

○ 처분대상

- 토지 : 파주시 금촌동 782-4 대지 473.8㎡

- 건물 : 파주시 금촌동 782-4 위 지상건물 637.4㎡

